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35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가. 2004년 개정 이래 변동 없는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의 정비를 통해 해석의 차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나. 그 밖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체 시립체육시설 중 9개 시설 및 29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함(안 별표3)
- 나. 별표3의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설정함.

- 1) 부과기준 단위를 현행 '1일당, 주간'에서 '평일,주간'으로 수정함
 - 2) 비고란의 가산기준 중 사용시간대별로 토요일·공휴일 주간은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평일·토요일·공휴일 조기, 야간은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가산하도록 상세히 구분함.
- 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의 통합('16.3.)에 따라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을 통해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협회(단체)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함(안 제5조제3항제1호).
- 라. 별표 3의 개정규정을 시행규칙 개정에 맞추어 '21.1.21.부터 시행하고, 시행일 이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1조 단서 및 제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5.28.~6.17.)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요

- 동 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의 전용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의 이용가치를 재정립하고, 시립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며, 그 밖에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나. 세부 내용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조정

- 시립체육시설 중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창동문화체육센터 총 9개 대상시설 및 29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함.

-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는 2004년 이래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아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훈령 제345호, 2017.8.7.)에 따라 전용사용료를 산정하여 [별표3]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영주체에 따라 서울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잠실운동장, 목동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신월야구공원, 창동문화센터를, 서울시설공단이 고척스카이돔(서남권돔구장), 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을 대상으로 전문용역기관의 원가조사 용역을 진행함.

용역 결과에 따르면 이론적으로는 2004년 이후부터 2019년까지 소비자물가 인상률 누계 25.77%의 인상이 필요하나, 전용사용료를 급격하게 인상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이용자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최근 3개년의 누적된 소비자물가인상률 4.74%만을 일괄적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임.

<년도별 소비자 물가인상률>

년도	지수	인상률
2017	102.680	1.26%
2018	104.370	1.65%
2019	106.280	1.83%
누적		4.74%

다만 인상률 적용시 사용료가 과도하게 인상되는 잠실야구장(LG스포츠, 두산스포츠), 효창운동장(서울특별시축구협회), 목동빙상장((주)와이키키 신사점), 고척체육센터(서울특별시체육회)는 예외로 하고 있음.

(2)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조문의 정비

- 먼저 [별표3]의 전용사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1일당, 주간’에서 ‘평일, 주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일당’이라는 표현은 실제 현장에서 2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수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또한 비고란의 가산기준을 △토요일·공휴일 주간사용과 △평일·토요일·공휴일의 조기·야간사용으로 구분함에 따라 관련 해석이 명확해질 것으로 판단됨.

<전용사용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비고	1. <u>토요일·공휴일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u>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	비고	1. <u>모든 시립체육시설에 대해 토요일·공휴일 주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평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가산한다.</u> 평일, 토요일·공휴일 <u>조기, 야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각각 가산한다.</u> 다만, 목동실내빙상장의 경우 <u>조기, 야간에도 당일 주간 전용사용료를 적용한다.</u>	2~9. (생략)
	2~9. (생략)		2~9. (현행과 같음)	

(3) 기타사항

- 안 제5조제3항제1호에 시립체육시설에서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협·단체에서 “국민생활체육회”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2016년 3월 통합된 것에 따른 합당한 조치로 보임.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단체는 제33조(통합체육회),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로 정의하고 있어 관련 용어에 통일이 필요한 바,

체육경기를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종목행사”로 구분하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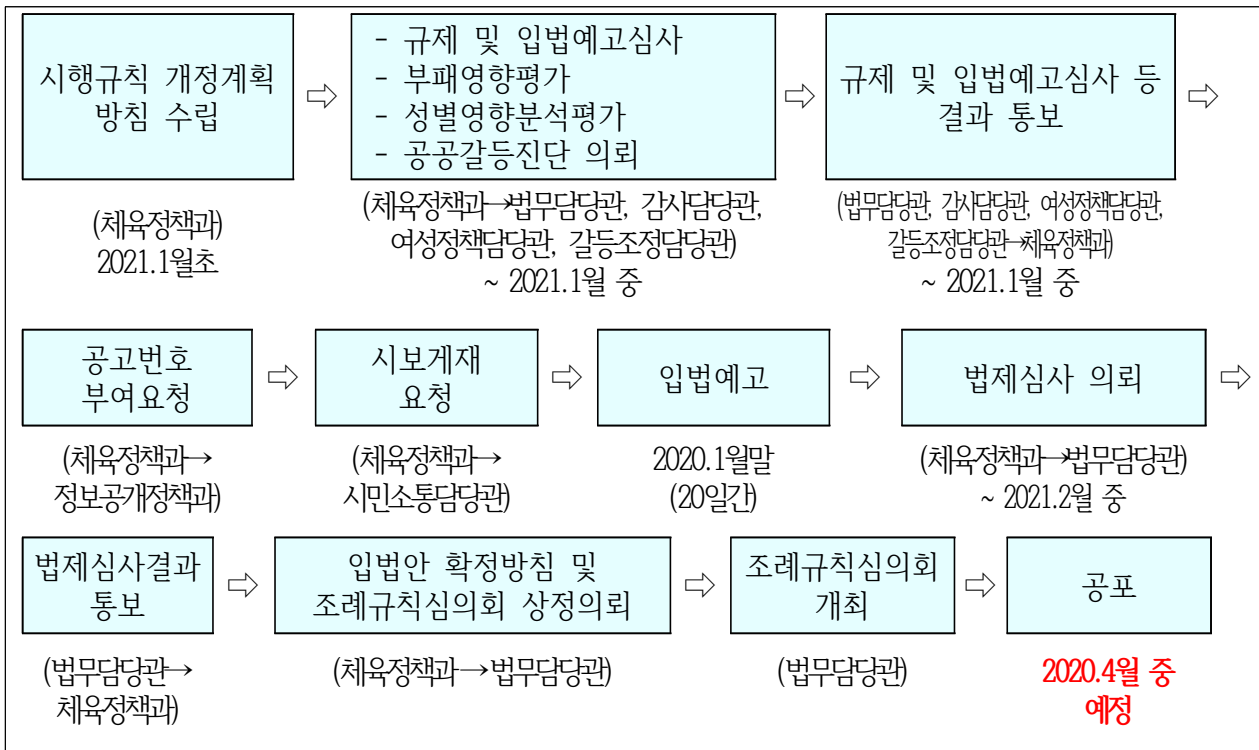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목이 ‘통합체육회’에서 ‘대한체

(4) 부칙규정

-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을 2021년 1월 21일로 정하고, 1월 20일까지 사용허가를 받도록 적용례를 두었으나,

관련 절차가 지연(상임위 상정 9월 2일→12월 17일)되었으며 조례개정 이후 전용사용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까지 수 일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2021년 4월 30일까지 사용허가를 받고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u>1월 21일</u> 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 ----- ----- ----- <u>5월 1일</u> ----- -----.
<신 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u>1월 20일</u> 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2021년 <u>1월 21일</u> 이후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조----- ----- ----- <u>4월 30일</u> ----- ----- ----- <u>5월 1일</u> ----- -----.

다. 종합의견

- 공공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소비자물가인상률을 반영하여 사용료를 인상할 필요성은 적으나 2004년 이후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던 바, 최근 3개년의 소비자 물가인상 누적률만큼 소폭 인상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사용료 산정근거가 되는 원가계산 용역 등의 분석은 2019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체육시설의 사용이 상당기간 중지되었고, 향후 시설이용이 정상화되더라도 사용료 인상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20년 서남권돔구장(고척스카이돔)의 경우 서울의 집중호우로 관중석 쪽 누수가 발생하여 빗물이 경기장에 유입되는 등 신설 체육시설에도 계속된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체육시설(잠실주경기장 등)의 경우 극심한 노후화로 현 상태에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이 시민의 정서에 합당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장기적으로 고려해볼 때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은 시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적정한 이용가치 재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박지혜	02-2180-8117